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용역제공대가 중 일부를 멤버쉽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멤버쉽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 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 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 (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 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질 의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 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큼 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 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 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 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 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 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 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 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 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 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제과-1769, 2020,11,30

▮질 의

•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 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인-1633, 2020.05.26

▮질 의

• • • • 골프장은 2017.11.29. 준공된 골프장으로 재무제표상 골프장 토지부문 • • • 억원과 별도로 토지상 일부에 잔디를 구축한 ***억원을 코스계정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 골프코스 유지·관리를 위해 훼손된 잔디에 대

하여는 잔디보충비를 지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 골프장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는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 가능한 지, 손상된 잔디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 출(당기 비용)인지

▮회 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조성된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지출된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산입할 수 있음

서면법령법인-1395, 2020.11.27

▮질 의

-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은 해당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
 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
 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며

-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는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하는데
-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채무면제명세서 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축하여야 함
- 금융채권자는 조세특례제한법》 4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 사업연도 에 A·B법인의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면제한 호
 -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44④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계상하고자한

진의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 권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A·B법인) 중 A 법인만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의 손금산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 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하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021 · 07 · 14 www.eAnSe.com 13